

#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운영세칙

제정 2008. 11. 1    개정 2017. 1.19  
개정 2013. 3. 1    개정 2024. 4. 1  
개정 2016. 3. 1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한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POSTECH University Professor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성과를 이룩한 정년보장교원이거나 총장이 대학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정년보장교원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임용원칙) ① POSTECH University Professor는 59세 이상의 정년보장교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2013.3.1.)(개정:2016.3.16.)

② 정년연장 여부는 62세 이전에 확정하되, 62세 이후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임용시점에 정년연장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개정:2016.3.16.)

제4조(임용인원) POSTECH University Professor는 정년보장 교원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7.1.19.)

제5조(임용기간) ① POSTECH University Professor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학과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년연장을 승인 받은 교원의 경우 그 임용기간을 70세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2017.1.19.)(개정:2024.4.1)

② (삭제:2024.4.1)

제6조(임용절차) 학과인사위원회 심의(필요 시 교원인사위원장이 외부전문가 평가 요청)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2013.3.1.)(개정:2016.3.16.)

제7조(임용시기) POSTECH University Professor의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13.3.1.)(개정:2016.3.16.)

제8조(처우) POSTECH University Professor로 임용된 교원에게는 별표1에 의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2016.3.16.)

제9조(중복임용)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임용은 학과특임교수와 중복하여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2016.3.16.)

제10조(준용)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임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6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7년 1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1. 이 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일 이전 임용된 POSTECH University Professor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개정:2013.3.1.) (개정:2017.1.19.)

구분	65세 이전	65세 이후
신분	전임	전임
급여	특별상여금 지원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	65세 해당연도 연봉의 30~100% 내외 수준에서 대학에서 지원
복리후생	-	필요할 경우 교수APT, 연구실, 실험실을 지원
기타지원	대학원생 배정, 실험실 추가 지원 가능	지도교수로서 학생 지도